

제1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 참가 보고서

박 광 빈

대한공증인협회 국제이사

I. 들어가며

2011. 9. 25. 부터 9. 26. 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공증인협회(UNI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국제공증인협회(UNIL)는 1948년 유럽과 중남미 19개 국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80개 국의 공증협회를 회원단체로 갖고 있는 공증인의 국제단체로서 우리나라는 2010. 10.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UNIN 총회에서 가입하였다(공증과신회 2011년 통권 제4호, 제26차 국제공증인대회 참관보고서 참조).

UNIL은 운영조직 중 하나로 대륙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서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에 조직된 것으로는 유럽지역위원회, 아메리카 지역위원회, 아프리카지역위원회가 있다. 아시아지역은 회원이 적었던 관계로(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나, 2010. 7. 18. 부터 7. 20. 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 공증인 포럼(9개국 참석: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서 아시아지역위원회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0년 UNIL 마라케쉬 총회에서 그 설립이 결정되었다.

II. 아시아지역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과정

□ 제1차 아시아 공증인 포럼 2010. 7. 18.~20., 일본 동경

UIN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설립 논의(상세한 내용은 안원모 총무이사의 제1차 아시아 공증인 포럼 참관기, 공증과신뢰 2011년 통권 제4호)

□ UINL 2010년도 정기총회 2010. 10. 1., 모로코 마라케쉬

UIN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를 설립하였으나,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UINL 회장이 임시 위원장직 수행

□ 일본공증인연합회 측 2010. 11. 25.자 서한 내용

한국의 UINL 회원국 가입을 축하하며, UINL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2010. 10.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아시아지역위원회(CAAs)를 설립하였는바, 대한공증인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이 문제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함.

□ 일본공증인연합회 측 2010. 12. 16.자 서한 내용

- ① 현재 공식인 CAAs 위원장을 UINL 차기 회장인 Mr. Jean Paul DECORPS가 임시로 맡았으나 2012년 가을 총회 때까지는 신임 회장을 정식으로 선출해야 될 것 같다는 점을 UINL로부터 일본공증인연합회 측은 전달받았음.
- ② 이에 대해 일본공증인연합회 측은 CAAs가 다른 대륙위원회와 달리 회원국이 4개 국에 불과하여 아시아의 다른 공증기구와 함께 하는 위원회 운영이 어렵고, 일본의 경우 인력 및 재정 형편상으로도 위원장을 맡기는 어려워 중국공증협회 측에서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위원당 수락은 아시아 각 회원국의 부담이 되고 있음.
- ③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UINL 회칙상 한 국가에서 위원장을 3년의 임기로 맡아야 하나 CAAs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1년마다 위원장을 맡아 1년에 최소 1~2회 이상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한공증인협회 측의 의견을 요청(UINL 회장은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함.

□ 대한공증인협회 측 2011. 1. 21.자 서한 내용

우리 협회는 위원장직을 순번제로 하되, 우리 협회가 신규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순번이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일본공증인연합회 측에 제시함.

□ 일본공증인연합회 측 2011. 3. 24.자 서한 내용

UINL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직 수행과 관련, 일본공증인연합회 측에서는 중국공증협회 측이 최근 서한에서 첫 번째 위원장직 수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각 회원국의 비용절감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일본의 경우 2010년 제1차 아시아공증인포럼 등의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2번째 위원장은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측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 협회가 최근 일본에 보낸 서한(신규 회원국인 만큼 위원장직은 제일 마지막 순번이기를 희망한다는 내용) 사본과 함께 인도네시아 측에 보냈으며, 일본 측은 그 다음 3번째 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보내음.

□ 일본공증인연합회 측 2011. 6. 6.자 서한 내용 및 중국공증협회 WANG Fujia 위원장의 2011. 6. 8.자 서한 내용

2011. 5. 26~28.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UINL 상임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는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첫 정기회의를 2011. 9. 26~27.(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회원국에서는 참가자로 4~5명, 옵서버 참가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태국, 베트남은 2~3명(옵서버 국가별 참가자 1명은 UINL에서 항공료와 숙박료 대납)이 참가하도록 요청.

※ CAAs 회의 아젠다

회원국의 공증제도 현황 및 2010. 7. 일본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공증인포럼 이후 옵서버 국가들의 공증제도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발표, 참가국 상호간 관심사 또는 친선방문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UINL에서 제시한 공증인 교육, 윤리 및 징계, 정부(당국)와의 관계, 공증(직업)에 대한 접근, 공증 영역의 개발 등 5가지 최우선 논의 과제 중 한 두가지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우

리 협회는 5가지 주제 중 최우선 주제로 윤리문제 또는 공증영역 개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중국공증협회 측에 2011. 6. 14. 제시).

Ⅲ. 제1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 내용

1. 9. 25. 회의 내용

9. 25. 저녁 5시 30분부터 리츠칼튼호텔에서 UNIL 장 폴 드골 회장을 비롯한 UNIL 집행부 임원들과 회원국인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김진환 수석 부협회장, 안원모 총무이사, 박광빈 국제이사)이 참석하여 논의된 사항은 다음 날 회의진행 및 위원장을 비롯한 회장단 구성문제와 다른 지역위원회의 경험에 관한 것이었고,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중국 측은 협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끝내 공식 표명하지는 아니하였다.

2. 9월 26일 회의 내용

가. 개회식

㉠ 인도네시아공증협회장(Adrian Djuaini)의 인사말

제1차 UINL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와 제3차 UINL 운영위원회 회의를 이번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인도네시아공증협회를 대신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회의를 통해 UINL 아시아, 유럽, 미 대륙, 아프리카의 모든 회원국이 앞으로 꾸준한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하여 향후 공증인의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공증인의 화합을 도모하며, 공증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

㉡ UINL 장 폴 드골 회장의 인사말

㉢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Patrialis Akbar)의 환영사

나. 회원국들의 발표 내용

(1) 일본

- 일본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공증인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함. 현재 일본 전역에 289개의 공증업무 사무소와 499명의 공증인이 활동 중.
- 주요 활동 내용
 - 공증업무 홍보 주일 (week)
 - 매년 10.1.부터 7.까지 공증 업무에 관한 홍보를 극대화하는 주일 (week) 로 지정하여 각 50개 지역구의 공증인 지역사무소와 협력. 2010년 공증주간 20주년 행사시 전국 67개 언론사와 협력하여 포스터와 책자를 나누어 주는 등 공증업무의 대중화(예를 들어 유언장의 공증 등)에 노력. 이 기간 동안 동경에 위치한 17명의 공증인이 전화를 통해 공증업무를 무료로 진행.
 - 지방(시골 위주)에서의 공증업무의 확대를 위한 노력
 - 고령화 사회에 발 맞추어 일본공증인연합회는 시골 위주의 지방도시에서 유언장 작성과 유산 상속에 관한 공증업무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예를 들어 북쪽 지방인 니가타 (Niigata) 포함}.
 - 오가사와라 군도를 위한 ‘이동공증사무소(mobile notary office)’ 운영
 - 오가사와라 군도는 동경에서 태평양 쪽으로 약 1,000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26시간 걸리는 선박이 유일한 교통수단임. 약 2,500 명에 달하는 군도 주민을 위하여 일년에 두 번씩 동경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인을 파견하는 형태의 이동 공증사무소를 운영 중.
- 향후 공증 제도 개선의 주안점
 - 공증 제도 및 공증 업무에 관련한 지속적인 홍보.
 - 공증 제도 및 공증 업무에 관련한 법률 해석 통일.

(2) 인도네시아

1) 개요

인도네시아의 현 공증제도는 2004년 발효된 법령 30호 ‘공증인의 지위와 관련한 법’의 규제를 받음. 인도네시아의 공증협회는 103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1997. 5. 30. 66번째 UINL 회원으로 가입함.

2) 인도네시아 공증 제도와 역할

- 인도네시아의 공증인은 공무원(public official)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국가 공권력(state power)의 일부를 민간(private) 법률시장에서 행사하는 형태임. 공증인의 주 업무는 공정증서 발급이며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함(위 법령 30호 1장 1절 내용에 근거).
- 인도네시아 공증인은 국가(법무부 장관령 및 인도네시아 인권법에 의거)에 의해 임명/해임됨.
- 인도네시아 공증인에 의해 발급된 공정증서는 발급을 담당한 공증인의 사후(또는 해임이나 정직 중)에도 그 효력을 유지.
- 인도네시아 공증인은 공무원으로서 ① 의뢰인의 법적 요구와 ② 의뢰인의 이익(사회적 요구)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의무(duty)가 있음. 인도네시아 공증인은 비단 공증인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앞서 사회적, 더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3) 현 제도의 문제점

㉠ 공증인의 교육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공증인이 되려면 학부에서 법(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문)을 공부한 후 ‘공증인 교육기관 (Notarial Education)’에서 관장하는 현재 5개 대학에 개설된 공증 석사과정(Notarial Master Program)을 수료해야 함. 본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매년 약 1,200명이 등록.
-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공증업무에 관한 관심에 비해 공증인의 교육의 질은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현재 인도네시아공증협회에 등록되는 공증인의 수도 매년 상향세인데, 이 중에는 공증인으로서 요구되는 필수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 공증인 교육기관의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조직력이 약한 것이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보임. 현재 석사과정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며 공증인의 교육은 전문가 과정(specialist program)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 전문가 과정은 60%의 전문적 기술 이수 및 40%의 학문적 지식 이수를 골자로 함(현재 공증 석사과정은 40%의 전문적 기술 이수 및 60%의 학문적 지식 이수).

㉠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 수 책정

- 인도네시아 공증인은 공무원으로서 각 지역별 공증인은 해당 지역의 인구수에 비추어 책정됨. 2009년 현재 인구 수 11,000명 당 1명을 기준으로 그 수가 책정됨. 이에 따라 공증인은 큰 도시지역을 위주로 결집하는 현상이 생겼으며 이는 소도시의 공증인 부재를 가져옴.
- 현재 자바(Java)와 수마트라(Sumatra) 섬 위주로만 공증인들이 자리잡았으며 다른 섬들에는 공증인이 많이 부족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이에 따라 특히 공증인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증 업무의 질이 저하되고 공증인 윤리강령을 빈번히 위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반인의 공증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예를 들어 공정증서가 법정에서 증거로써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4) 개선의 노력

㉠ 공증인의 교육

- 현재 공증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전반적인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현직 공증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의무화.

㉡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 수 책정

- 공증인의 수에 관련한 실무는 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각 시 또는 도에 공증인의 수가 적정선을 초과한 경우 추가 공증인 임명을 불허할 필요

가 있음(예를 들어 현재 자카르타시의 경우 공증인의 적정 선은 600명 인데 현재 1,000명이 넘는 공증인이 활동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 공증인법을 시행함에 있어 네덜란드의 공증 제도를 활발히 비교 연구하고 있음.

5) 결론

위 거론된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하여 다른 UINL 회원국들의 의견을 환영함. 향후 인도네시아 공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바람.

(3) 중국

- 현재 3,011개의 공증업무 사무소와 12,000명의 공증인이 활동 중. 여성은 4,700명으로 약 40%이고, 40세 이하는 5,000여 명으로 41.6%임. 2010년 중국 법무부는 416명의 공증인을 새로이 임명하였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공증인 수의 증가와 더불어 공증업무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맞춤.
- 중국에서 공증인은 독립된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
- 최근 공증업무 제반에 관한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 중이며 공증인의 역할도 이에 발맞추어 변화되고 있는 추세.
- 공증제도의 표준화 및 공증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법규의 표준화에 관한 인식도 향상됨. 이에 따라 중국공증협회는 ‘상속재산 공증에 관한 지침(Guiding Opinions on Inheritance Notarization)’을 제정하고, 또한 ‘공증인 윤리강령에 관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of Notary Public)’을 수정, 선포함.

(4) 한국

※ 구체적인 내용은 ‘V.기타 : 참고자료’에 대한공증인협회 발표자료 원문 게재.

다. 오퍼버 국가들의 발표내용(발표자료 제출국)

(1) 베트남

- 베트남 법무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
- 베트남은 지난 25년 동안 매년 7~8%에 이르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된 정치를 이루는 것을 국가 발전의 주안점으로 삼음.
- 지난 2006. 11. 29. 베트남 제11차 국회에서 공증(notarization)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07. 7. 1.부터 시행에 들어감. 시행 후 현 4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주요 발전을 이룸.
 - 공증 업무의 전문화
 - 공증 업무의 다원화
 - 2011년 가을을 기준으로 하여 공증 업무를 다루는 기관은 현재 총 418개소(국가기관 134, 개인 사무소 274). 지난 4년 간 약 700명의 공증인이 임명됨. 특히 공증 업무를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개인 단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증 업무 시장에 적정 수준의 경쟁을 도모함.
 - 공증 업무의 공익(public service)화
 - 과거 베트남 공증업무는 국가 행정기관에서만 전담 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공익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증 업무 수준의 향상을 꾀함. 또한 공증 업무에 관한 적정 수준의 요금을 정함.
- 향후 베트남 공증제도에 관한 개선 노력의 주안점
 - 공증업무 및 제도에 관한 규정을 베트남 사법부의 개혁에 맞추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 나갈 것.
 - 2020년까지 공증인 단체의 설립을 위해 '마스터 플랜 (Master Plan)' 을 계획 및 시행.
 - 공증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베트남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국적의 공증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공증인의 '행위 규칙 (Rules of Conduct - 윤리 강령 등)' 제정 및 시행.

(2) 라오스

- 라오스 공증사무소는 1954년 창설되어 1975년 라오스의 독립과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이 창설되면서 그 활동이 중단됨. 1991년 제2차 인민 국회가 다시금 공증인법을 통과시켰으며 2000년 법무부 산하에 공증부(Notary Department)가 창설, 2004년 8개 관할 구역에 공증사무소가 개설.
- 라오스 공증사무소는 국가 기관에 속해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음.
- 각 지역의 공증 사무소는 책임자 (director) 1인, 부책임자(deputy director) 2인 과 더불어 업무 양에 따라 추가 법률 및 행정직 사무직원으로 구성.
- 공증인 자격 요건
 - 라오스 공증인은 공무원으로 임명. 라오스 공증인은 라오스의 시민 (citizen) 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25세 이상
 -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
 - 고등 법률(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3년 이상의 법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 자
 - 공증교육(notary training)을 이수한 자
 - 형사상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자
 - 심신이 건강한 자
- 각 공증사무소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는 수상 (prime minister) 에 의해 임명되며, 이 때 임명 소청은 법무부 장관이 함.
- 현 제도의 문제점
 - 행정 지역구는 143개인데 반해 공증 지역구는 8곳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조차 공증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음(절대적인 공증 사무소 수가 부족).
 - 공증인의 경험 부족.
 - 공증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
- 향후 공증 제도 개선의 주안점
 -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협력, 노하우 전수, 인력 교류 등.
 - 향후 라오스는 국제 관련 기구 및 국제 조약을 점진적으로 체결할 계획.

라. UINL 측의 발표 및 평가

UINL 임원으로부터 UINL Chamber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각 나라의 발표내용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다.

IV. 앞으로 준비할 사항

아시아지역위원회는 매년 1회 회원국들이 순번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2012년은 중국이 개최하고 우리나라는 2013년에 개최를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① 국제회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 변호사 확보. (가칭) 국제협력위원회의 구성.
- ②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학계 등의 지원.
- ③ 대한공증인협회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할 직원 확보.

V. 기타 : 참고자료

대한공증인협회 측 발표자료

1. 한국 공증제도 2010/2011 현황

(1) 개설

- 공증인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1961년 이래 처음으로 2009년 전면 개정되고, 2010. 2. 7.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증인법은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 공증제도를 도입하고, 공증인 임명·인가 기준과 징계 강화 등 공증사무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등 한국 공증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 또한 공증인법 시행령과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등 5개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작업도 완료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개정 법령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 공증수수료를 면제하고, 각종 공증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낮추는 등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공증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엄격히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선서인증제도 도입과 시행

1) 내용

사서증서 성립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해 주는 선서인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2) 효과

종래의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뿐 그 증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까지 보증해 주지는 못하였으나, 선서인증을 받은 진술서 등 사서증서는 단순 인증된 사서증서에 비해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담보되는 등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어, 행정기관 등에 대해 매우 유용한 소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민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증거보전수단 및 증거조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진단서의 진정성립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작성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경우에 선서인증을 받은 진술서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의 관청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선서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외국에서도 우리 공증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전자공증제도 도입과 시행

1) 도입배경

종래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사무는 종이문서만을 전제로 하여 전자문서(‘컴퓨터 등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문서’)에는 공증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많은 양의 문서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통용되고 있고, 특히 2008. 1. 제정된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의 전자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정관 등 공증을 받아야 하는 문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경우 이를 공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전자적으로 작성된 정관과 사서증서 등 전자문서에 공증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되어 2010. 8. 7.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 제도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증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공증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지정공증인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지정공증인으로 지정 받으려는 공증

인의 지정 신청, 촉탁인·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법무부에서는 1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을 개발, 2010. 4.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2010. 5. 부터 6.까지 2달간 시범운용을 실시한 후 법 시행과 동시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4) 공증인의 임명기준 등 강화 및 교육 체계화

1) 임명·인가 기준 강화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강화하고, 정년을 75세로 규정하여, 공증사무의 신뢰성·적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증인 징계 강화 및 교육 체계화

공증인 징계를 강화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공증인으로 최초 임명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 법무부가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강제가입단체로 전환된 대한공증인협회로 하여금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증담당변호사와 사무보조자 등 공증사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있다.

3)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 도입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를 도입하여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임명·인가공증인의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공증사무소의 난립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총 정원은 임명공증인의 경우 86명, 인가공증인은 190개소이다. 다만 2010. 2. 7. 이전에 인가를 받고 공증사무를 취급 중인 법무

법인 등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정원제 도입 이후에도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그 외 변경된 공증제도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증수수료 면제

종래 공증 수수료 면제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고, 면제 여부 또한 공증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증 수수료를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보다 손쉽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상한 등 하향

종래 150만 원이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을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를 인증받을 때 일반 사서증서 수수료의 3배까지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도 배액만 내면 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6) 공증제도 각종 통계

[공증인 변화 추이]

※ 매년 12. 31. 기준

연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임명공증인	15	21	24	29	30	30	33	33	38
인가공증인	283	296	299	326	338	362	375	372	359
합 계	298	317	323	355	368	392	408	405	397

〔 2011. 8. 25. 현재 각 지역별 공증인 현황 〕

지 역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공증사무소 합 계
		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서 울	14	177	942	191
의정부	1	13	47	14
인 천	0	22	70	22
수 원	8	37	123	45
춘 천	1	3	10	4
대 전	3	8	27	11
청 주	2	8	31	10
대 구	3	20	82	23
부 산	2	19	79	21
울 산	2	7	25	9
창 원	4	8	27	12
광 주	2	16	56	18
전 주	0	6	21	6
제 주	1	2	5	3
합 계	43(11.05%)	346(88.95%)	1,545	389(100%)

〔 공증업무 처리 현황 추이 〕

※ 매년 12. 31. 기준 / 단위 : 건

구분 연도	공정증서 작 성	정 인 관 증	법인의사 인 증	사서증서 인 증	기 타	계
2002	1,209,329	60,782	495,616	804,186	1,418,321	3,988,234
2003	2,095,568	57,780	567,896	855,869	3,620,984	7,198,097
2004	1,022,003	47,721	492,795	911,697	1,162,835	3,637,051
2005	690,330	54,004	505,817	1,087,973	1,315,934	3,654,058
2006	691,710	52,186	533,277	1,018,542	1,324,916	3,620,631
2007	799,089	55,156	553,276	1,084,259	1,555,036	4,046,816
2008	779,806	51,851	543,118	909,435	1,973,880	4,258,090
2009	684,944	33,035	499,386	785,977	1,694,918	3,698,260
2010	760,336	10,985	396,193	823,075	1,881,490	3,872,079

2. 아시아 지역 공증인 단체와의 협력

회원국을 비롯한 각 국 공증인 단체와의 교류는 상호 공증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대한공증인협회의 재정 등 여건상 회원국 또는 옵서버 국가와의 개별적 방문계획이나 여타 단체와의 교류는 전혀 계획된 바가 없고, 다만 10월 초 러시아 하바롭스크 공증인회에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러 공증제도에 관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 공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 법무부, 법원, 학계 등이 참석하는 공증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되어 공증직역 확대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각종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국을 비롯한 각국의 선진제도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이 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재정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갖춰 향후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와의 친목뿐만 아닌 정보교류를 실천하여 상호 제도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하며, 각국 공증인협회에서도 한국 공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바란다.

3. 회원국 간의 최우선 협력 활동

(1) 공증직역 개발

1) 공증제도개선위원회 활동사항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한국에서는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 법원,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단기·중기·장기 형태의 공증제도 개선 사항을 설정하여 공증직역 확대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공증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올해 최우선 공증제도 개선 사항으로 ① 공정증서의 집행력 범위 확장을 통한 부동산 분쟁 예방, ② 전자공증제도 확대(전자문서 확정일자 부여 등), ③ 선서인증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여 관계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공정증서 집행력 범위 확장

현행법상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가 규정한 대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정동산이나 토지·건물 등의 인도 또는 명도의무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공증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독일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특정물 인도에 관하여 분쟁 이전에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기능의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1년에 법개정을 통하여 특정 건물·토지·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를 신설하여 공증 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정동산의 범위 중 정형적 집행증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동산에 준하는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공장 등은 제외될 예정이며, 특히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청산내용이 확정된 것을 기초하여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등의 반환도 포함하도록 제한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2) 현재 도입되어 시행을 앞둔 공증직역

㉠ 후견계약의 공증제도 도입

2011. 2. 18.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도입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와 관련, 후견계약의 체결은 공정증서로 하도록 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 후견계약 종료시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2013. 7.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후견계약의 공증업무에 수반되는 서식, 수수료, 실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검토 중에 있는바, 이미 시행중인 일본 등 회원국들의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다.

㉠ 자기신탁 제도 공증 도입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

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하는 신탁법이 2011. 7. 25. 국회를 통과하여 2012. 7. 26.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관한 문제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3) 향후 공증지역 확대 방향

㉠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 제도 도입

공증의 예방사법으로서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공증 강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재산법상 및 가족법상의 중요법률행위에 있어서 중요하고, 특히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는 부동산실명제, 보유세 및 양도세 등 세금, 부동산투기문제 등 제반에 걸쳐 그 진실한 권리관계의 기재요청이 절실하여,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도 독일, 스위스처럼 등기원인의 공증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족법상 중요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 제도 도입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개인의 재산법 및 가족법상의 중요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요구하고 있듯이 가족법상의 중요한 법률행위 중 상속, 유언, 부부재산계약, 재산분할약정 등은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각종 신고 중 창설적 신고에 해당하는 혼인신고, 이혼신고 전 협의이혼의사 확인, 입양신고, 협의파양 신고 등에는 공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증이라는 강력한 증거력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용이함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확대

법원의 검증조서에 비견할 강력한 증거보전의 방안으로 공증인이 실지(實地)에 임하여 목격하고 경험한 상황을 기록하는 사실실험공정증서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예컨대 사권(私權)의 취득·상실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견문하거나 체험하여 확인하여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하거나, 대여금고의 개방점검, 변제의 제공, 화재현장확인, 존엄사, 지적재산분야에서 공증제도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공증인협회의 역할

- 공증제도는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고 증거를 만들어 줌으로서 법률생활의 명확성을 도모하여 사후적인 분쟁을 방지하며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간의 법률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이른바 ‘예방사법’의 기능과 더불어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 이러한 공증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증인협회에서는 공증제도의 실질화·선진화를 도모하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한공증인협회에서도 2011. 3. 정기총회에서 공증인 윤리강령을 최초로 채택하고 그 시행에 들어갔다. 